■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4.1.1.>

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등 동의서

위임장	위임받는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사용용도		위임사유		관계	
		발급증명서 종류	☐ 수급자 증명서 (발급통수 :) ☐ 장애인 증명서 (발급통수 :)				
	위임자	본인의 해당 증명서 발급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법정대리인 등 동의		(성명:)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법정대리인·후견인 등 : (주민등록번호 -) (서명 또는 날인)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연락처 :					

※ 유의사항

1.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에는 작성연월일**을 기재하며,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입니다.
2. **2부 이상의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또는 동의서의 **발급통수란에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3.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증명서를 위임하여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모두 작성**하여야 합니다.
4. **주민등록 말소자는 위임을 받을 수 없으며**, 피위임자(위임자)가 제출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장애인 등록증을 제외한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시하여야**합니다.
5. 다른 사람의 인장이나 **서명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예 : 사망한 자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신청하거나 발급받은 자 등)는「형법」제231조 내지 제2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중 친부모인 법정대리인이 부재한 경우에는 법원의 선임에 따라 결정된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에 한함)
7. 대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본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날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에 한하여, 위임받은자가 분리가정의 구성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8. 법정대리인은 인감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